

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및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158,000천원	(국비)	(시비)158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장애인복지정책과	조경익 02-2133-7440	장중석 02-2133-7360	김현숙 02-2133-736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0예산액 (A)	2021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348,000	(x-) 158,000	(x-) △190,000	(x-) △55
사무관리비	(x-) 344,000	(x-) 104,000	(x-) △240,000	(x-) △70
기타보상금	(x-) 4,000	(x-) 4,000	(x-) 0	(x-) 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0	(x-) 50,000	(x-) 50,000	(x-) 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원 수당 20,000,000	= 20,000천원
	○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4,000,000	= 4,000천원
	○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80,000,000	= 80,000천원
기타보상금	○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 4,000,000	= 4,000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장애인인식개선 홍보사업 50,000,000	= 50,000천원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

사업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
-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(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)
-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(보상금 지급 등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1.1 ~ 12월
- 추진방법 : 장애인인식개선 홍보사업 연중 추진,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(연 2회) 등
- 사업의 주요내용
 -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
 -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
 -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, 홍보 등

추진경위

-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'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' 조항 신설(2014.1.9)
-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'보상금 지급' 조항 신설(2014.1.9)

□ 2021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58,000	
사업계획 수립	2021.01~2021.03		
사업추진(연중)	2021.01~2021.12	158,000	장애인인식개선 홍보(연중),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(연 2회) 등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8년도	○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(2회)
2019년도	○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(1회) ○ 장애인 인식개선 카드뉴스 제작(5편), 장애인인식개선 웹드라마 제작, 발달장애인인식개선 다큐멘터리 제작
2020년도	○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(1회)(2020.9월말 기준) ○ 장애인식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(2,200개소), 홍보사업 자문회의 개최(5회)(2020.9월말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대중매체를 활용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,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